

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성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7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  
발 의 자: 김성준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김 경, 김영철, 민병주, 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 서준오, 소영철, 송도호, 오금란, 유정희, 윤영희, 이상욱, 이상훈, 이승미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임규호, 임만균, 전병주, 최기찬, 최재란, 한 신 의원(2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시 마을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로 교체·도입되고 있는 바, 향후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
- 신규 마을버스 도입 시 전기버스의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, 재활용,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사업자가 전기버스를 신규 마을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수치화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지원 및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함(제10조 제9항)
- 나. 사업자는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정함.(제11조 제3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, 대기환경보전법 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를 신규 마을버스로 도입하는 경우, ‘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’의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1조 제3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때에는 제10조 제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⑧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 <u>⑨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를 신규 마을버스로 도입하는 경우, ‘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’의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사업자의 책무) ①·② (생략)            ③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<u>한다</u>.</p>	<p>제11조(사업자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u>하며,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때에는 제10조 제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시장의 책무) 제9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시장의 책무) 제9항을 신설하여, 사업자가 전기버스를 신규 마을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

추   계   분   석  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